

인권·성평등센터에서 하는 일

고충상담

- 차별, 인권침해 후유증, 성적지향, 성 정체성 관련 고민 등
-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 침해행위로 인한 어려움
-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 치유를 위한 상담

사건처리

-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 신고에 따른 조사
- 사안에 따라 합의·중재·조정 절차 진행
- 조사위원회 소집을 통한 심의·의결

교육

- 「인권과 성평등 교육」 관리 운영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연구 및 정보제공

- 교내 인권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 인권과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정보 제공
- 인권 의식 제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 자격** • 본교 재학생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
- 활동** • 인권과 성평등 관련 주제 토론 및 Study
• 인권존중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침해 상담 신청

- Tel. 02-3290-1700, 2841
- E-mail. helper@korea.ac.kr
- 위치. 동원글로벌리더십홀 101호 (방문예약 필수)
* 고려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
*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됩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문의

- Tel. 02-3290-2843
- E-mail. humanrights@korea.ac.kr
* 동아리, 학생회 등 맞춤교육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http://humanrights.korea.ac.kr/>

인권·성평등센터 The Center for Human Rights and Gender Equity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인권이란?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성별, 종교, 국적, 장애, 사상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성적자기결정권이란?

- 타인의 강요나 간섭없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권리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성적 언동은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교내 규정 이해하기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2조(정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침해 행위

- 정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유형** 폭언, 폭력, 강요,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성희롱

- 정의**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
- 유형**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성폭력

- 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 행위
- 유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공중 밀집장소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유통, 소비, 영리추구) 등

괴롭힘

- 정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유형** 무관하거나 과도한 업무부여, 업무수행 방해·무시·배제, 사적 응무 지시, 협박 등

2차 가해

- 정의** 사건발생 이후 행위자 또는 주변인들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유형**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행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주는 행위, 행위자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화해시키거나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하는 행위 등

그밖의 인권침해

유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방해, 지켜보기, 글이나 물건 전달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신체조건, 사회적 지위, 종교, 개인의 사상 등에 따른 차별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 및 강압, 위계관계에서의 강요

학생, 교원, 직원으로 신분상 주어지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로막는 행위



권리 침해 발생 시 대처요령

피해자 대처

- 정중하고 단호하게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행위 중지, 사과 등을 요구하기 (단, 의사표현을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 발생한 사건의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기 (자책하지 마세요!)
- 피해 사실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하고 증인과 관련 자료 확보하기 (CCTV, 영수증, 통화기록 등)
-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쪽지, 댓글 등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기 (화면 캡처하기)
-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사진 찍어두기, 병원 진단서 발급받기
- 성폭력 피해의 경우 씻지 말고 산부인과에 가며, 당시의 옷가지 등은 그대로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 주변 사람과 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행위자 대처

-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즉시 수용하고 행위 중지하기
-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어떤 행동이 불쾌감과 피해를 주었는지 생각하고 잘못 인정과 사과하기
- 기관이 개입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 성실하게 절차에 따르기
- 자신에게 문제제기한 상대방이나 사건에 대하여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기
- 자신의 행동 습관과 태도를 성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주변인 대처

-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정서적 지지와 신뢰 주기
-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기
- 사건과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 비밀 지키기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지 않기
- 주변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부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기

